

## <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>

### I. 감면대상

- ☐ 재산세 과세기준일(6월1일)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,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

※ 단, 유흥·향락, 도박·사행업종 제외

### II. 감면내용

- ☐ 감면세목 : 재산세 7월·9월(건축물, 토지)(2022년도 한시적)

※ 재산세 7월 건축물분 감면 후 남은 금액 재산세 9월 토지분에서 감면

- ☐ 인하임대료 적용기간 : 2022. 1. 1. ~ 2022. 12. 31.

#### <주요 감면 적용기준>

- ◇ 임대료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%에 대하여 감면
- ◇ 임대기간 3개월 미만 인하 시, 3개월로 환산하여 평균 인하금액의 50% 감면
- ◇ 7월·9월 정기분 재산세·지역자원시설세·지방교육세 합계금액 최대 200만원 한도 감면
- ◇ 골프장, 고급오락장(도박장, 유흥주점영업장 등) 등 사치성 재산은 제외
- ◇ 현행 지방세법령 등에 의한 중복감면 배제(지특법 제180조 적용)
- ◇ 임대료 인하 후,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감면액 추징

### III. 신청절차

- ☐ 신청기간

- 2022. 5. 1. ~ 2022. 12. 31.

- ☐ 신청방법(방문, 우편, 팩스 등)

- 팩스 : (서구청) 032-560-2724(수신확인 문의 : 032-560-4200~7)  
(검단출장소) 032-718-1508 (수신확인 문의 : 032-718-1520~5)
- 방문 : 인천 서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/ 검단출장소 재산세팀
- 우편 : (서구청)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7 세무1과 재산세팀  
(검단출장소) 인천 서구 검단로502번길 15 검단출장소 재산세팀

### IV. 신청서류

- ▶ 지방세감면신청서
- ▶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 사본
- ▶ 약약서·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▶ 세금계산서,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서류
- ▶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서류) 등

※ 소상공인확인 신청 및 발급 :

☞ 신청·접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[www.semas.or.kr](http://www.semas.or.kr)) 지역센터 방문접수

☞ 문의처 : (국번없이) 1357 중소기업통합 콜센터

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’(<http://sminfo.mss.go.kr/>) 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 가능.

○문의처 : 인천 서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(032-560-4200~7), 검단출장소 재산세팀(032-718-1520~5)